

FIP-2009-0005 (통권 제129호, 2009. 5. 13)

기업금융 애로해소를 위한 정책개선과제

ISSUE
PAPER

Contents

I. 조사개요	3
1. 조사목적	3
2. 조사대상	3
3.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3
4. 조사내용	3
II. 조사결과 개괄	3
III. 기업금융 애로해소를 위한 정책개선과제	5
1. 자금 조달 관련	5
1) 채권시장안정펀드의 회사채 매입 확대	5
2) 회사채 발행요건 완화	5
3) 중견 대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원활화를 위한 현장감독 강화	6
4) 전자어음 발행에 따른 어음할인 한도의 중소기업 여신 분류	7
5) 정부 및 공공기관 공사대금에 대한 브릿지론 대출 활성화	7
6) 환매조건부 토지매각 대금의 용도제한 폐지 및 환매비용 현실화	8
2. 수출입금융 관련	9
1) 환변동보험 활성화	9
2) 수출업체 수출금융 환가료율 인하 적용	10
3) 해외 프로젝트 관련 산은, 수은의 본드 한도 확대	10
4) 조선업체의 선수금 환급보증제도 보완	11
5) 수출경쟁력강화펀드 신설	12
3. 금융규제 관련	13
1) 환율급등에 의한 부채비율 상승기업의 재무약정체결 일시 유예	13
2) 외화대출 당시 적용환율로 동일인 여신한도 계산	13
3)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한 금융사 진입규제 완화	14
4) 증권회사 고객예탁금에 대한 예금보험료 부과 폐지	15
5) 증권회사의 신탁업 겸영시 인가요건 완화	16
6) 증권회사 및 금융회사의 임원겸직 규정 완화	16
7)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17
8)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추가 인가시 심사요건 완화	18
9) 국제회계기준 도입시기의 조정	19

- FKI Issue Paper는 경제 및 정치·사회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대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자료는 본회 금융조세팀 류성원 과장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6336-0518 FAX : 6234-5288 E-mail : won@fki.or.kr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2008년 하반기 이후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른 신용경색이 지속됨에 따라 주요그룹별 기업금융 관련 경영애로사항 파악
- 그룹별 방문조사를 통해 기업금융 관련 경영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도출된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대정부 정책과제 제시

2. 조사대상

- 상위 20대 그룹 재무·기획 담당 임원·부서장

3.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 조사방법 : 방문·인터뷰 조사
- 조사기간 : '09.2.5~'09.3.25 (7주)

4. 조사내용

-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기업금융 관련 경영애로사항

II. 조사결과 개괄

- [종합]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신용경색이 지속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자금조달, 수출입금융, 금융규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 [자금조달] 회사채발행은 A등급 이상은 가능(건설업은 A+)하지만 BBB등급의 회사채 발행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은 가능하지만 유상증자, 신규대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채권시장안정펀드의 회사채 매입대상 확대(BBB 등급 회사채 포함) 및 채권 매입 속도 제고, 회사채 발행요건 완화 등 추진 필요
 - 과도한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을 폐지하거나 축소 운용하고 중견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금융기관 지도 필요
 - 전자어음 B2B(+) 할인한도의 중소기업 여신 분류, 공공기관 공사대금 브릿지론 대출 활성화, 환매조건부 토지매각 대금의 용도제한 폐지 및 환매비용 현실화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요인 해소 필요
- [수출입금융] 수출환어음은 한도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환변동보험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산스는 일부 재개되고 있는 수준임
-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기금을 확충하고, 환변동보험 활성화 방안 필요
 - 중장기 해외프로젝트에 필수적인 본드(계약이행보증 등) 활성화를 위해 국책은행 한도 확대 필요
 - 수출업체의 수출금융 환가료율을 인하(100bp 내외) 적용하고, 대출이 아닌 조선업체 선수금환급보증의 여신한도비율 축소(선수금의 50% 수준) 필요
 - 은행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기업 자금지원으로 연결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 수출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위한 수출경쟁력강화 펀드 신설 필요
- [금융규제] 부채비율상승에 의한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금융사 진입규제 등으로 기업 경영활동에 다양한 애로요인 산재한 상황
- 환율급등에 의한 부채비율 상승효과를 감안, 한시적 지원방안 마련(환율급등에 의한 부채비율 상승기업의 재무약정체결 일시 유예, 외화대출 당시 적용환율로 동일인 여신한도 계산 등) 필요
 - 금융업 관련 각종 진입규제 및 이중규제 완화(부채비율을 기준으로 한 금융사 진입규제 완화, 증권회사 고객예탁금에 대한 예금보험료 부과 폐지, 증권회사의 신탁업 겸영시 인가요건 완화, 증권회사 및 금융회사의 임원겸직 규정 완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추가 인가시 심사요건 완화 등) 필요
 -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2014년으로 연기하거나 선택적 도입 추진 필요

Ⅲ. 기업금융 애로해소를 위한 정책개선과제

1. 자금 조달 관련

1) 채권시장안정펀드의 회사채 매입 확대

【현황】

-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채권매입 속도가 느리고 신용등급이 A 이상인 우량 회사 위주로 매입하고 있음

【문제점】

-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채권매입 속도가 느려 1차분 5조 원 소진시기인 2월말까지의 채권 매입규모가 금융당국의 당초목표의 절반수준에 불과
 - 자금시장안정을 위해 출범했음에도 회사채 발행이 가능한 A등급 이상 기업 회사채 매입비중이 높은 반면, 자금조달이 어려운 BBB 등급 기업 회사채 매입은 규모도 적고 30% 이하의 한도까지 설정되어 있음
 - 건설업종의 경우 A등급을 받은 기업의 회사채도 매입이 되지 않고 있음
- * A등급 회사채 발행추이 : (08.11월)2,500억 → (08.12월)5,650억 → (09.1월)1조 9,350억 → (09.2.8)7,350억

【개선방안】

-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채권 매입 속도를 높이는 한편, 신용등급 BBB 이하인 회사채 매입비중을 확대하고, 올 6월말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를 우선 매입

2) 회사채 발행요건 완화

【현황】

- 금융감독기관은 회사채 발행에 대한 이사회 의결 시 발행가격, 금리, 시기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사전에 확정하도록 요구하고, 기타 발행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담당 집행임원이 아닌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도록 권유
- 해외사채 발행시 국내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내 기관투자가 중 금융투자업자(증권, 자산운용사 등)를 제외한 은행, 보험사 등은 참여가 제한되어 있음

【문제점】

-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사회 의결 시 분할발행을 포함한 발행 세부사항을 실무적으로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우며, 기타 발행 세부사항의 대표이사 위임은 신속한 자금조달을 어렵게 함
 - 발행총액은 사전에 확정하되 발행통화, 조달시기, 회차별 발행금액은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
- 해외사채 발행 시 국내 기관투자자 참여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투자자 Pool이 축소되어 발행금리가 상승함
 - 해외 회사채 발행에 국내 기관투자자가 참가할 경우 금리가 0.3%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개선방안】

- 회사채 발행 이사회 의결 시 발행금액, 금리, 시기 등 발행 세부사항을 실무 담당 집행임원에게 위임 가능하도록 허용
- 해외사채 발행 시 국내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금융투자업자 이외에 은행, 보험사도 참여 가능토록 해외사채 취득가능 국내 기관투자자 범위를 확대

3) 중견 대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원활화를 위한 현장감독 강화**【현황】**

- 정부는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관리하고 있음
 - * 정부·은행간 MOU상 중소기업 대출비율 :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문제점】

-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대출을 증대하기보다 대출비율 유지를 위해 대기업 대출과 개인중도금 대출을 억제하거나 축소 운용하고 있는 실정
 - 대기업의 여신지원 불가로 중소기업체에 종이어음이나 전자어음이 등장하고 결제일 또한 과거보다 늦어져 중소기업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음
 - * 대기업 대출(말잔 증감) : 4.8조 원(10월) → 0.9조 원(11월) → △2.8조 원(12월)

- 특히 중견 대기업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기업 여신이 축소 운용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

【개선방안】

- 자금의 원활한 흐름과 회전을 위해 과도한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을 폐지하거나 축소 운용하고, 중견 대기업에 대한 대출금 잔액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금융기관 지도 강화

4) 전자어음 발행에 따른 어음할인 한도의 중소기업 여신 분류

【현황】

- 전자어음 B2B(+) 발행에 따른 어음할인 한도는 현재 대기업 여신으로 분류되고 있음
 - * B2B(+) : 발행회사의 신용으로 할인이 되고 할인한 중소기업에는 상환청구가 불가능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업계에선 통상 전자어음으로 불리고 있음

【문제점】

- 전자어음 B2B(+) 할인한도는 실질적으로 하도급업체에 혜택이 돌아가고 있으나, 대기업 여신으로 분류되어 금융기관이 한도 증액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
 - 전자어음 B2B(+) 할인한도가 중소기업 여신으로 분류될 경우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에도 부합될 수 있어 금융기관도 선호할 것으로 판단됨

【개선방안】

- 전자어음 B2B(+) 할인한도를 중소기업 여신으로 분류

5) 정부 및 공공기관 공사대금에 대한 브릿지론 대출 활성화

【현황】

- 건설회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로 정부 및 공공기관 공사대금에 대한 브릿지론 대출이 시행되고 있음

【문제점】

- 브릿지론 대출시 대출자금 용도한정, 대출한도 산정 시 잔여공사에 대한 잔여 공기 일할계산(최대 180일) 등 제한요건으로 인해 업계 유동성 개선에 한계

- 업체당 한도 약 2,000억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잔여공사의 180일분에 해당하는 10~20개 사업장을 합산하고 사업별 공동도급사의 동의서를 받는 등 어려움 산재
- 또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때문에 대기업의 보증서 대출도 기피하고 있고, 실질 자금조달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조달자체가 힘든 상황
 - 신용보증기금의 수수료 3.5%에 금융기관 대출금리 6~7%를 추가할 경우 실질 조달비용은 약 9~10% 수준임

【개선방안】

- 보증한도 산출을 잔여공사 포괄양도 방식 등으로 단순화하고, 자금용도 제한 폐지, 금융기관 대출 의무비율 산정시 제외 등 유인책 제공
- 실질 조달비용이 과도한 현실을 감안하여 신용보증기금 수수료 인하 및 대출금리 인하

6) 환매조건부 토지매각 대금의 용도제한 폐지 및 환매비용 현실화

【현황】

- 업체가 보유한 토지를 토지공사에 환매조건부로 매각할 경우 매각 대금을 의무적으로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지정하고 있고, 채권 매각에 따른 손실이 업체에 부담으로 전가되어 비용이 과다함
 - * 환매조건부 토지 : 환매를 조건으로 매각하는 토지로서, 매각 1년 뒤 토공이 땅을 처분할 때 매각 건설회사에 우선 매입의사를 물어 토공 매입가격+채권이자+판매·관리비로 팔고, 살 의사가 없다고 하면 일반매각절차에 따라 땅을 처리하는 과정을 거침

【문제점】

- 환매조건부 토지매각은 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도입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용도제한으로 인해 업체의 유동성 확보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형태로 변형되어 운영되고 있음
- 매각대금도 토지공사 채권(이율은 국고채 이자율)으로 지급하고, 매각에 따른 손실도 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환매시 취득세·등록세도 별도 부담하고 있음
 - 환매조건부 토지를 재취득시 환산비용이 약 17% 선으로 추정

【 개선방안 】

- 업체 유동성 지원을 위해 토지공사의 토지 매각대금에 대한 용도제한을 폐지
- 토지채권 매각에 따른 손실분을 보전(환매시 차감 등)하고 환매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토지공사의 일반관리비 감액

2. 수출입금융 관련**1) 환변동보험 활성화****【 현황 】**

- 최근 수출보험공사는 국제 금융불안의 지속으로 인해 수보와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의 거래한도 축소, 기간제한 등에 대응, 환변동보험 운용을 대폭 축소함

【 문제점 】

- 시중은행을 통한 환위험관리가 어려워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을 이용해 왔던 중견·중소기업들이 환변동보험을 활용하지 못해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음
 - 기업들이 향후 원화절상을 우려해 해외수주 및 수출확대를 위한 영업에 적극 나서지 못함으로써 수출전반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음
- 환변동보험을 수보로부터 인수하는 시중은행의 외환부족으로 환변동보험 취급이 곤란하고, 환수금 미지급 기업이 증가하면서 보험기금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
 - 선물환거래를 위해 기업들은 금융기관에 증거금(Margin)을 예치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일부 대기업만 가능할 뿐 금융기관이 받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
 - 수보는 미회수 환수금이 급증하자 우량기업에 대한 선별 없이 기업별 인수한도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재책정시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요구

* 09.2월말 현재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환수금 미회수액 5,000억 원

【개선방안】

-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기금을 확충하고, 환변동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
 - 올해 수보에 추가 출연한 3,100억 원 외에 5,000억 원 이상을 추가 출연할 필요
 - 수출금융지원용 외화 중 일부를 환변동보험 반대매매에 활용토록 용도를 지정하거나 환변동보험 반대매매를 위한 외화를 시중은행에 추가 공급
 - 수보가 금융기관에 증거금을 예치하고 선물환거래한도를 확보하여 환변동보험을 재개하고, 환변동보험 가입업체들은 수보에 증거금 예치
 - 정상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해온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기존한도 이상의 한도를 책정하고,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요구는 철회

2) 수출업체 수출금융 환가료율 인하 적용**【현황】**

- 은행들이 수출업체에 적용하는 수출금융 환가료율은 400~470bp 수준으로 매우 높은 상황임
 - * 환가료 : 외국환은행이 대고객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자금부담을 보상받기 위하여 징수하는 여신금리적 성격의 수수료

【문제점】

- 국내 시중은행들은 무역금융을 위해 정부로부터 통화스왑 자금을 저리로 입찰받아서 기업에 제공할 때는 높은 환가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기업의 수출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음

【개선방안】

- 현행보다 무역금융 환가료율 100bp 내외 인하

3) 해외 프로젝트 관련 산은, 수은의 본드 한도 확대**【현황】**

- 국내 은행들은 중공업제품의 해외 프로젝트가 장기간 소요되어 BIS비율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업체들의 본드 개설 요청을 거부하고 있음

【문제점】

- 세계 경기 침체로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서도 각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SOC 투자 확대로 미국, 중동, 인도 등을 중심으로 중공업제품의 해외 프로젝트 발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중공업 제품의 프로젝트는 장기성 대규모 사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본드(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등)가 수주에 필수적이나, 본드발급이 원활하지 않아 수주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개선방안】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관련 본드 한도확대 및 지원

4) 조선업체의 선수금 환급보증제도 보완**【현황】**

- 조선업체 선수금 환급보증 시 신용공여 금액은 한도금액 70%의 50%(한도의 35%) 금액과 선수금 입금액의 50%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하고 있음(외화여신 한도의 신용공여금액 적용기준)

【문제점】

- 선수금환급보증은 직접 여신(대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여신반영비율 적용으로 동일인 여신한도에 과대계상 현상이 초래되고 있음
- 원화 여신한도 계산 시 환급보증한도에 대하여 신용공여 금액의 35% 적용으로 환율상승 시 신용공여 금액이 과대 계상되어 한도 부족현상 초래
- 외화 여신한도 계산 시 은행자기자본의 13%(회계기준) 적용으로 환율상승시 한도가 축소되어 외화한도 부족현상 초래
 - * 여신한도는 원화, 외화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으며, 외화 여신한도는 통상 은행자기자본 13% 한도내에서 운용하고 있음

【개선방안】

- 원화 여신한도 계산 시 선수금 환급보증의 여신반영 비율을 선수금의 50% 수준으로 축소(기업여신한도의 35% → 선수금 입금액의 50%)

- 외화 여신한도 계산 시 은행자기자본의 13%(회계기준) 적용기준을 15%~20% 정도 상향조정하거나 선급금 입금액의 50% 적용 기준을 10~20% 적용 기준으로 하향적용하여 환율상승시 신용공여 한도 축소현상 완화

5) 수출경쟁력강화펀드 신설

【현황】

- 플랜트 제작수출의 경우 수주계약을 근거로 수출목적물 인도 완료 시까지 제작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제작금융 지원이 있으나, 상품 및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금융 지원이나 혜택은 전무한 상황

【문제점】

- 동일한 수출 업체임에도 수주 산업은 금융지원을 받고 있으나 상품 및 제품 수출 업체는 금융지원이나 제도적 지원이 없음
- 현재와 같이 글로벌 경제침체와 비정상적 환율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BIS 비율 악화를 우려하는 은행의 기업 여신한도관리에 따른 기업대출제한, 수출입 금융 제한 등으로 인해 은행을 통한 유동성 지원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은행에 대한 유동성 공급보다는 직접적인 자금지원이 필요

【개선방안】

- 정부주도의 수출경쟁력 강화 펀드 신설
 - 상품 및 제품 수출을 하는 기업에게도 환율상승 등 외부요인에 제한받지 않고 수출네고 물량의 소화, 수입유산스 결제 등 수출입금융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수출관련 지표(전년도 수출실적 또는 평균 수출실적 등)를 근거로 지원하는 수출경쟁력강화펀드 신설

3. 금융규제 관련

1) 환율급등에 의한 부채비율 상승기업의 재무약정체결 일시 유예

【현황】

- 주채권은행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주채무계열(대기업)에 대해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가 합격기준에 미달할 경우 주채무계열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
 - 재무구조 평가방법 : 부채비율 구간별로 합격기준을 부여한 후 이자보상배율(채무상환능력), 매출액영업이익률(수익성), 총자산회전율(효율성)을 평가한 종합점수로 합격기준 통과여부를 판단함

【문제점】

- 지난해 환율 급등으로 인하여 외화환산 손실이 급증하면서 재무구조 평가의 주요항목인 부채비율이 기업의 실적과 상관없이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업종 특성상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은 재무구조 평가에서 불리한 상황
 - * 원달러 환율 : 2007년말 938.20원 → 2008년말 1,257.50원
- 재무구조개선약정은 비영리 부동산 매각, 유상증자를 통한 부채비율 조정 등의 자구계획을 담고 있어 해당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개선방안】

- 환율상승으로 부채비율이 급등한 기업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일시 유예

2) 외화대출 당시 적용환율로 동일인 여신한도 계산

【현황】

- 환율 상승으로 기업의 외화대출 평가액이 급증하고 있으나 원화 기준으로 여신한도를 적용함에 따라 여신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함

【문제점】

- 외화대출 평가액 급증으로 동일인 여신한도 비율이 초과될 경우 해당기업은 추가 자금조달이 곤란

- * 동일인 여신한도 : 현행 은행법에는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자본금 + 잉여금)의 25%를 초과하는 대출을 못하도록 규정

【개선방안】

- 외화대출은 대출시 환율을 적용하여 동일인 여신한도를 계산

3)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한 금융사 진입규제 완화

【현황】

- 금융시장에 진입하는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평가 기준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부채비율 200%를 적용함
 - 현행 금융회사 관련법률의 시행령은 부채비율을 300% 이하로, 감독규정·지침은 출자회사 및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모두 200% 이하일 것을 요구

【문제점】

- 업종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은 조선, 항공, 해운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집단은 금융시장 진입에 차별을 받고 있음
 - 조선업은 대금지불조건의 특성상 선수금 비중이 커서 부채비율이 높고, 수주가 늘어날수록 선수금도 확대되어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구조이나, 선수금은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미실현수익으로 차입금과 성격이 다름
- 신용평가기관, 증권거래소 등 각 기관들은 기업의 신용등급, 상장기준 심사시 부채비율만으로 기업의 재무건전도를 평가하지 않음
 - 신용평가기관은 재무제표는 참조자료로 활용하고, 거시경제전망, 산업전망을 토대로 향후 기업의 실질적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함. 증권선물거래소는 기업 신규상장 심사시 동종업 부채비율의 2배 미만 기준을 폐지

【개선방안】

- 획일적인 부채비율 대신 이자보상배율, 자기자본대비 차입금 비율, 신용평가 등급 등 적절한 평가기준을 마련

4) 증권회사 고객예탁금에 대한 예금보험료 부과 폐지

【현황】

- 증권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고객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함과 동시에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
 - 증권회사는 현재 고객예탁금의 100% 이상을 증권금융에 예치하며, 동 고객예탁금에 대해 은행의 1.4배에 이르는 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

< 금융기관별 보험료 산정산식 >

금융기관	산식
은행	분기별 보험료 = 예금등의 분기별 평균잔액 * 10/1만 * 1/4
증권회사	연간 보험료 = 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20/1만
보험회사	연간 보험료 = (책임준비금 + 수입보험료)/2 * 30/1만
증권사	연간 보험료 = 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30/1만
저축은행	연간 보험료 = 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30/1만

*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중 증권금융에 예치한 고객예탁금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의 30%를 인하함

【문제점】

- 이미 자본시장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 운영목적이 아닌 순수한 고객예금보호목적의 예금보험공사 보험료 부과(예금자보호법 제30조 및 영 16조)는 중복규제임
 - 증권사들은 은행, 저축은행 등의 부보금융기관들과는 달리 고객자산에 대해 증권금융을 이용한 100% 이상의 보호제도를 완비하고 있으므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험료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임

【개선방안】

- 증권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폐지

5) 증권회사의 신탁업 겸영시 인가요건 완화

【현황】

- 09.1월 개정 자통법은 겸영에 대해서도 신규법인 인가요건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문제점】

- 구 신탁업법은 자기자본 2,500억원, 영업용 순자본비율 200% 이상인 증권회사에 대해 신탁업 겸영을 허가했고, 신설 자통법도 금융투자회사의 신탁업 겸영 시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였음
- 그러나 개정 자통법은 증권회사가 신탁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규법인 인가시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토록하고 있어 08년부터 신탁업을 준비한 금융투자회사의 사업계획에 차질 발생
- 은행, 보험회사의 경우 금융투자업 겸영에 대한 인가 시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자통법 시행령 16조6항)

【개선방안】

- 증권회사의 신탁업 겸영 시 인가요건 완화

6) 증권회사 및 금융회사의 임원겸직 규정 완화

【현황】

-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계열사의 임원이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제45조 제2항 2호)
 - 구 증권거래법의 임원 겸직 제한은 계열사와 증권회사에 모두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만을 제한했으나, 현행법은 상근과 비상근 모두를 금지

【문제점】

- 임원겸직금지 규정은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중인 당국의 정책기조에 반할 뿐만 아니라 책임경영 원칙에도 저촉되며 외국의 입법례도 찾기 힘들
 -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대주주가 정식 임원으로서 경영참가 및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책임경영의 원칙실현에도 부합

-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계열사의 임원, 직원간 겸직, 파견을 법이나 규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 또한 자본시장통합법상 계열회사간 정보제공의 제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행사 금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금지, 상법상 자기 거래 의결권제한 등 겸직제한의 취지를 달성할 장치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음
- 겸직제한의 범위를 금융투자업자의 기능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비금융회사인 계열회사 임직원의 겸직을 불허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계열회사 임원이 금융투자업자의 비상근임원 겸직이 가능하도록 허용
 - 고객 자금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계열사간 정보교류의 차단이 필요하나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는 고객자산을 단순 수탁관리하거나 고객자금이 아닌 회사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이해상충 문제가 적어 겸직제한을 완화할 필요

7)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현황】

-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 캐피탈 등)의 업무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부수업무 관련 애로가 많은 상황

【문제점】

- 금융위원회는 08.6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지난 9개월여 동안 법률 개정작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아 2010년 7월경에나 시행가능(국회통과 6개월 후 시행)한 상황
 - 현정부 출범 직후 금융규제개혁 TF를 통해 실행방안을 준비했으나 계획만 발표되고 제반 법률 개정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기업활동에 애로가 큼
 - *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정부방침에 따라 08.9월 ‘여전업 발전방안’ 을 마련, 중고차판매업, 단기렌탈업, 회원전용시설 운영업무, 통신판매범위 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음

- 여신전문금융업종은 최근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 자동차 판매 위축에 따른 캐피탈사 영업 축소 등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 배가
 - 업무범위 확대는 모든 금융권에서 동일하게 규제완화될 예정이나 여신전문 금융업권은 입법 진행이 더더 업종간 경쟁에서도 불리한 상황
 - * 보험업법, 저축은행법은 08.10월 입법예고되고 08.12월 국회에 제출된 상황

【개선방안】

- 업무범위 확대법안(네거티브 방식도입)이 상반기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 등 신속한 진행 필요

8)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추가 인가시 심사요건 완화

【현황】

- 금융투자업의 업무추가 인가시 대주주 범위, 벌금형 범위 등 대주주 심사요건이 강화되어 신규진입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조2항이 삭제됨)
 - 대주주요건으로 대주주 출자능력(자기자본 출자금 4배이상), 재무건전성(부채비율 200% 이하 등), 사회적신용(형사처벌, 채무불이행,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 전력 여부 등)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개정 前	개정 後
○업무추가 인가시에는 법15조보다 완화된 대주주 요건 적용 - 대상 : 최대주주에 한정 - 형사처벌 : 5억 원 이상 벌금형	○업무추가를 위한 인가시에도 법12조 신규진입시의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 대상 :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주주,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등 - 형사처벌 : 벌금형

【문제점】

- 최대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특수관계인 주주,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등에게 소액의 벌금 등 경미한 정도의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에도 금융투자업의 신규 영업 진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폭넓게 법을 적용하고 있음

【 개선방안 】

- 금융투자업의 업무추가 인가시 완화된 대주주요건 적용
 - 적용되는 주주의 범위를 최대주주에 국한하고, 이 경우 최대주주의 경미한 형사처벌 전력은 대주주 요건심사에서 제외

9) 국제회계기준 도입시기의 조정**【 현황 】**

- 상장기업은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함

【 문제점 】

- 글로벌 경제침체가 심화되어 기업의 화두가 생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제고를 명분으로 2011년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도 2014년 도입예정인 만큼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음
 - 한국경제와 한국기업에 대한 디스카운트 현상이 만연한 상황에서 외국기업과의 비교가 용이한 국제회계기준 조기도입이 기업들에게 유리하지 않음

【 개선방안 】

-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2014년으로 연기하거나 선택적 도입 추진